

주빌리 정의를 위한 주빌리 교육의 내용*

유은주(연세대학교/강사)

777integrity@naver.com

한글 초록

최근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을 비롯해 다양한 위기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독교교육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본고는 구약의 희년사상에 초점을 맞춰 현대적 맥락에서 주빌리 정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희년법은 노예해방과 부채면제, 토지반환과 휴경의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예화를 막고 평등을 보존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사상은 그동안 신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왜곡되어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간과됨으로써 사회정의를 위한 기독교적 실천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희년사상은 기독교의 사사와 문제라든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희년사상은 제도적 차원에서 잘못된 법률과 제도를 개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실천 및 인식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 성서적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주빌리 정의를 지향하는 주빌리 교육은 다양한 간학문적인 지식들을 토대로 하여 인식적 차원으로는 기존의 잘못된 통념을 깨뜨림으로써 학습자들의 의미관점의 전환을 돕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여론의 활성화 등 사회적 행동을 지원한다. 이로써 기독교교육의 학습자들이 불의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공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희년, 주빌리 정의, 주빌리 교육, 토지 공(公)개념, 빈곤 문제, 인식 전환, 제도 개선, 공유경제

* 이 논문은 201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연구역량장학금 지원에 의한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19년 11월 9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는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구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으로부터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정부의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경기침체는 미국의 대공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배달 업체나 온라인 쇼핑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점포를 운영해 온 소상공인들은 폐업에 이르기가 부지기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및 임대료 적게 받기 운동 등을 장려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는 국민 복지의 제도적 강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가구 구성원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 임시적인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말에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Parijs & Vanderbourght, 2017), 지난 2003년에 시행된 브라질의 Bolsa Familia 효과로부터(황예랑, 2017) 긍정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와 관련하여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생활고(生活苦)가 야기될 수 있으며,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1.9 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 인구가 7억 명 가량에 해당되고, 세계인구의 절반은 하루에 5.5 달러 미만의 열악한 삶에 처해있다는 사실로부터(Howton, 2018)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본고는 구약성서 레위기기에 등장하는 희년의 의미를 재고하고, 그동안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희년사상이 간과되었던 원

인을 살핌으로써 희년사상에 기초한 기독교교육, 즉 ‘주빌리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한 후에, 현대적 상황 속에서 희년의 실천 방안을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주빌리 교육은 마리아 해리스(1996, 74-91)의 “주빌리 정의”(Jubilee justice) 개념에 기초하여, 인식적 차원에서는 학습자들의 의미관점의 전환과, 실천적 차원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차후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상세하게 개진코자 한다. 궁극적으로 주빌리 교육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기독교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II. 희년의 의미와 주빌리 교육의 필요성

1. 희년의 의미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희년(Jubilee)은 일곱 번째 안식년 이후에 맞이하는 제 50번째 해로서, 대제사장은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 번째 안식년인 제49년째 7월 10일이 되면 전국에서 불나팔(히브리어로 *yôbēl*)을 불어 대(大)속죄일을 선포함과 동시에, 다음 해가 희년이 됨을 선포한다(장성길, 2019, 99-100; Habel, 1995, 104).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레위기 25장 10절)

희년이 되면, 그동안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모든 종들은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헤어졌던 가족들을 기쁨으로 만나며 더 이상 빚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무 땅에서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광야생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Park, 2004,

158).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생계로 인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덜고, 오직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기를 바라셨으며,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속죄일과 함께 회년이 선포된다는 점은 하나님께 대한 속죄가 영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나 기도, 회개, 헌금 등 소위 종교적인 행위보다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타자를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정의와 공의로 요약될 수 있다(김근주, 2019). 따라서 회년법이 요구하는 네 가지 규정, 즉 노예해방과 부채면제, 휴경 및 토지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또한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즉,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실천의 방식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빛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전 세계의 빈곤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점으로부터, 가령,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인도 농민들의 대규모 자살 사태를 비롯해서 환경과 생태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김준우, 2011).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파괴성과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유은주, 2019; 장윤재, 2016; 2008).

궁극적으로 회년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존재하는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즉 관계성과 평등성, 개방성에 근거한 살롬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강영택, 2008; 김현숙, 2004, 65).

성서에서는 회년법의 실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민수기 27장 1-11절과 36장 1-12절에서 모세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그들에게 배분된 기업(유산/토지)을 잃지 않도록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레위기 25장 23장의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는 말씀과,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신명기 27장 17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룻기에 나타난 고

엘제도는 왕조시대 이전에 역사적으로 희년법이 실재했음을 나타낸다(대천덕, 2003, 31-32; Bellinger, 2016, 217).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왕 시대까지도 관습법으로서 희년법이 여전히 효력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대천덕, 2003, 38-46). 그밖에도, 에스겔 46장 16-17절에서는 포로기 당시에도 희년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고, 이사야 37장 30절, 예레미야 34장 8-22절에도 희년법이 전제되고 있음을 통해 희년법은 성서의 다양한 구절들을 이해하게 하는 배경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희년법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간들로 하여금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다시 시작(reset)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인간으로서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평등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그분의 자비하심, 긍휼을 잘 드러낸다. 이런 견지에서 희년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비롯하여 예수의 십자가 구속 등 신구약 성서의 주요 사건들과 연결되며(신현우, 2019; 장성길, 2019), 초대교회 및 초대 교부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김유준, 2019a; 2019b). 결론적으로 희년사상은 정의에 대한 염원과 맞닿아 있다.

2. 주빌리 교육의 필요성

그동안 정치 철학계에서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 이어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실제로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대중의 절반 이상은 사회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 가운데 특히 빈민구제와 환경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독교가 공적 역할을 지도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uthnow, 2002, 383-388). 학습자들의 필요가 이렇다면, 기독교교육은 이에 대해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교육자들 역시 정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폭력과 차별, 다문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양극화 문제, 교육과정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왔다(강영택, 2008; 강용원, 2011; 김난예, 2019; 김은주, 2016; 김정준, 2016; 박미경, 2019; 백은미, 2017; 2016; 오인탁, 1989; 오현선, 2009; 윤용진, 2015; 1995; 이금만, 2012; 2007; 이윤석, 2011; 이윤희, 2016; 임희숙, 2010; 장종철, 1991; 채혁수, 2019; 최은택, 2018).

각각의 논의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희년의 사회개혁 사상이 기독교교육에서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까지 희년사상은 교회교육 분야에서 종종 간과되어 왔으며, 이례적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희년신학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했는데(이금만, 2012), 예를 들어, 성인교육을 위한 『13개의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 교재』 시리즈에는 희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편, 2015; 2016; 2017)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논의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문제제기로부터 교육적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수행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들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과정과 교재, 교사 훈련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기독교적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립이 희년사상을 토대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처럼 이념 갈등과 전쟁,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정황 속에서 “희년의 성취”란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희년에 대한 언급조차 기피하게 할 수도 있다는 한계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교회 내의 성도들 역시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까닭에 한국 사회 안에서 희년에 대한 가르침은 잠정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희년사상이 영의 교육과정(null curriculum)으로 숨겨짐으로써(Eisner, 1994; Flinders, Noddings, & Thornton, 1986) 결과적으로 사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된 희년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은폐되었으며,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희년을 비현실적인 이상, 또는 구약에 국한된 내용으로 인식함으로써 희년사상이 가진 실천적 의미가 크게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희년”은 현재 ‘50주년 행사’를 기념하는 의미로서 축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희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재는 희년에 대한 신학화 작업의 실패를 증명한다.

그러나 월터 브루그먼(2002, 197-208)에 따르면, 희년법은 궁극적으로 권력 및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성서의 핵심을 차지하며, 기독교 신앙이란 단지 영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하여 통전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토지문제를 외면한 채 영적인 면에 국한시킨 기존의 성서해석 방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불평등을 수용하게 만들고 “가진 자들의 교회에 안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희년에 대한 오해는 그것이 토지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로써 희년사상은 “성서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사상”으로 손꼽히고 있다(정중호, 2015, 98-104; Hartley, 1992, 265; Tidball, 2016, 385).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중략)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의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존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레위기 25장 23-28절).

희년법은 이처럼 하나님의 토지소유권에 기초하여 한 가족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영속적으로 보장한다(Hartley, 2006, 847). 즉, 각 가족은 유산으로 받은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환권(무를 권리)을 가지며, 이것은 빛을 진 원래 주인이 언제라도 돈이 생기면 희년까지 남은 햇수에

비례한 값을 주고 토지를 되찾을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친척들이 대신 그 빚을 해결해 줄 수 있고(고엘제도), 그마저 어려우면 희년에 자연스럽게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현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정당한 토지매매 절차를 전제로 삼는다. 즉, 토지 매매시 지가(地價)는 50년 주기력에 따라 희년까지 남은 햇수 곱하기 해당 토지의 한 해 생산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토지라도 희년이 가까울수록 매매가는 적게 책정되는데(장성길, 2019, 100; de Vaux, 1983, 317), 결국 이것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치면 매매라기보다는 임대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대식 토지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해당되었다(대천덕, 2003, 17-18). 이런 논리로 바뀌어 생각하면, 현대적 상황에서 희년법의 의미는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독교계 내에서 희년에 관한 인식은 “희년이 실현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비평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 정초된 것이 대부분이었다(Hartley, 2006, 826-827; Wenham, 1979, 318). 대표적으로, 롤랜드 드보(Roland de Vaux)로 대표되는 구약 비평주의자들은 희년의 실제성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제도로서 희년제도가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이 없으며, 희년제도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이상주의자들로부터 발명된 유토피아적 이상”이라고 비약했다(de Vaux, 1961, 176-177). 또한, 구약학자인 로버트 노스(Robert North)는 희년법이 부분적으로는 시행되었을지라도,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North, 1954, 204-205).

이처럼 그동안 신학계에서는 희년제도가 실재(實在)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희년법을 단지 이상법으로 국한시키려는 견해들이 일반적이었으며, 희년법이 존재했다가 결국에는 붕괴되었거나, 강제법이 아닌 관습법의 형태로 남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Kim, 2011, 398; Wenham, 1979, 3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법의 시행과 관련되어, 고대 근동에서 50년 주기력이 실재했다는 점과(de Vaux, 1983, 319), 희년법 제정 당시 주변국에 이와 유사한 사면제도가 존재했다는 점(Hartley, 2006, 825),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이스라엘 초기 당시 집터의 규모가 왕조시대와 달리 일정했다는 점 등을 통해(de Vaux, 1961, 73), 희년제도가 실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BC 2400-2200년경에 후리족의 누주(Nuzu) 문서에는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안두라루”(andurāru: 왕의 칙령을 통해 재산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사면’과 ‘해방’을 뜻하는 희년의 핵심 개념인 “드로르”(dêrôr)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한, BC 1900년-1600년경에 바벨론에서는 통상적으로 왕이 즉위한 첫 해, 혹은 7년째에 왕의 칙령인 “미쉬나룸”(mīšnarum)을 통해 공적, 사적 부채의 면제 및 노예해방, 토지반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경열, 2016, 512; Hartley, 2006, 823-825).

또한, 희년법의 생성시기와 관련하여, 희년법은 레위기 중에서도 최고(最古)의 성결법전에 속해 있다는 점과, 희년법 조항에는 고대에만 쓰이던 희귀 단어들(출현한다는 점, 당시 주변국들과의 법률 비교 등을 통해 이스라엘 초기에 생성된 것으로 짐작된다(Hartley, 2006, 823-825; Wenham, 1979, 318).

이런 근거들을 통해 구약학자인 제이콥 밀그롭(2010)은 희년이 “반드시 (실재하지 않은) 유토피아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2247), 유대교식 연대기 분석 결과, 바벨론 왕 고레스(Cyrus)의 즉위 시기(BC 538/537년)와, 시드기야 왕의 노예해방 시기(BC 588/587년), 그리고 느헤미야의 파견 시기(BC 438/437년)가 희년에 해당됨을 밝혔다(2264-2270). 이를 통해 희년이 단지 개념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은 희년사상에 근거한 정의 개념인 ‘주빌리 정의’를 토대로 하는 ‘주빌리 정의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주빌리 정의’란 마리아 해리스(1996)의 Proclaim Jubilee에서 차용한 용어로, 해리스에 따르면 그것은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피상적인 정의 개념과는 달리,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과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에 대한 ‘공감’(sedaqah)과 ‘공정한 판결’(mispāt)이라는 구약의 개념에 기초하여 개개인이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신의 권리를 포기, 양

도(relinquish)하는 것을 의미한다(76-79). 해리스는 기독교교육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주빌리 정의의 실천을 제시했다(73-76).

그렇다면 주빌리 정의는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으며,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주빌리 정의를 위한 주빌리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세속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희년사상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은 사사화된 기독교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학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빌리 교육은 의의를 지닌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착취 및 환경파괴의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갈등의 문제 및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Kim, 2015, 316), 주빌리 교육은 사회정의를 촉진하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불의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Ⅲ. 현대적 맥락에서의 주빌리 정의 실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는 당시의 로마제국 및 지도자들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최영실, 1997). 신약학자인 샤론 린지(1985, 92-97)에 따르면, 희년의 선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희년은 하나님의 주권을 표상한다. 따라서 희년사상의 핵심은 삶의 권위가 인간이나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데 있다. 또한, 희년법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율한성을 자각하고 물질(物神)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탐욕을 극복해야 함을 알려준다(Bright, 1967, 153). 이런 점에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의 탐욕과 소유욕을 다스리는 일이 기독교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희년을 지향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단지 사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의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 속에서는 법과 정의를 구

현하는 것으로 기대된다(Groome, 1980, 36-43). 실제로 역사적 예수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당시의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했고, 결국 정치범으로 죽임을 당했다(김균진, 1994, 159-16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크게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나뉘어 한편에서는 예배와 기도, 전도 등에 주력하지만 사회문제나 문화, 역사는 도외시한 채 탈역사적인 기복주의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화와 인권, 통일 등 사회적 문제에 큰 비중을 둬으로써 기초적인 신앙 형성 및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시하는 인본주의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이금만, 2007, 88-89).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제자이자,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기독교인들은 불의한 현실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독교적 전통과 현재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관시키면서 제자로서의 사명과 시민으로서의 사명 간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Coleman, 1989). 이런 견지에서 제도적 차원에서와 개인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실천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제도적 차원의 주빌리 정의 실천

우선, 희년법은 개개인의 내적 변화보다는 사회 전체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 그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주빌리 정의의 실천은 제도적 차원에 있어서 부유층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불의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부분과 주빌리 2000, 롤링 주빌리 등에서 이루어지는 부채면제 운동,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어 볼 것이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킴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대추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의 수립이 필수적이다(전강수, 2010, 60-75). 본래 '지대'(rent)란, 토지로 인한 수익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2013)는 "상

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비롯되며 지대를 통해 돈은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이전 된다”고 지적했다(433). 이처럼 사회의 나머지 성원을 희생시켜 부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지대추구 행위’라 명명하며, 예를 들어, 정부와의 커넥션을 통해 천연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따거나 물자 조달권 등의 특혜를 획득하는 것,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장에 진입 장벽을 설치하는 것,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세 등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130-134).

부동산 거물들을 비롯해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자행되는 이런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은 수탈의 대상이 된다. 일례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손실은 일반 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이종권, 2008, 195-196). 또한,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1/3 이상 하락하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중하위 계층은 큰 손실을 본 반면, 경기침체 이후 실시된 구제정책에 의해 부유층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상 상태를 회복했다. 또한, 그들은 이윤 획득 및 탈세를 합법화하는 데 유리한 법률과 규칙들을 제정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법률가 및 회계사 등의 고급 인력들을 활용하고 그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지불하고 있다(Stiglitz, 2013, 83, 130-134).

결과적으로 지대추구 행위는 경제의 비효율화 및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경제를 왜곡시킨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광범위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투자 및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이는 기회 균등성의 약화로 이어져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이 심화되며, 국민의 복지를 후퇴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적 수준 및 행복도가 하락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이것은 다시 생산성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동시간을 늘림으로써 가족 내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Stiglitz, 2013, 202-218).

따라서 지대추구 행위는 보다 효율적인 경제와 보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법률과 정책 입안 과정을 통해서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 혹은 저해하는 법률이나, 경영진의 재량권 범위를 결정하는 기업 거버넌스 법률, 독점 지대의 규모를 제한해야 마땅한 경쟁 관련 법률 등을 통하여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거의 모든 법률들은 분배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법률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대개 이런 혜택은 다른 집단을 희생시킨 데에서 비롯된다. 어떤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효력은 대개 분배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다(Stiglitz, 2013, 156).

예를 들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의 약탈적인 대출 및 신용카드 관행의 차단,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효과적인 기업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독과점 행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Stiglitz, 2013, 117-145).

또한, 지금까지 잘못된 사회구조와 제도를 통해 특권층이 누린 부당한 이득에 대해 누진세를 비롯한 공정한 조세제도로써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대차액을 비롯해서 자신의 노력보다는 우연에 의해 갖게 된 모든 종류의 지대에 대해 정부는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지대 추구 행위에 가담하려는 유인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의 피해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Stiglitz, 2013, 358-364).

이처럼 사회 속에서 잘못된 법률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주빌리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주빌리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채면제 운동의 확산 및 제도화로 구현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면제를 위한 ‘주빌리 2000’(Jubilee 2000)과 미국의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운동, 우리나라의 ‘주빌리 은행’의 예를 들 수 있다.

먼저, 주빌리 2000은 요한 바오로 2세의 희년선포에 영감을 받은 두 명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영국국교회와 가톨릭교회, 옥스팜(Oxfam), 영국정부 등이 협력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적, 비정부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Myers, 2017, 225-226). 이로써

영국 정부는 가난한 20개국의 14억 3천불에 해당하는 부채를 면제해 주었고, G7을 비롯해서 IMF와 세계은행 등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채권국들이 이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Park, 2004, 157-158).

또한, 롤링 주빌리 운동은 2011년 월가 점령시위(Occupy Wall Street)에 의해 촉발되어,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장기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했고, 이로써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수많은 채무자들의 3천만불(약 380억 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결과, 2014년에 이와 유사한 Debt Collective 운동이 시작되었고, 미국 국회에서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금 면제와 등록금 면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Larson, 2019).

한국에서도 2015년에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주빌리 은행을 설립하여 설립 당해만도 100억 원 어치의 부실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채무자 2800여 명을 구제하였다(이재욱, 2015). 2019년 현재에는 청년 채무자들을 위한 '희년은행'이 주빌리 은행을 이어 활동하고 있으며, 고금리 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과 교육, 무이자 전환대출을 지원하고 주거비 절감을 위한 청년 공동주거지원 대출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도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Parijs & Vanderbourght, 2017), 더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국가 재정을 지원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 내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임경석, 2011), 2008년-2010년에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93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삶이 넉넉해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실험 전 76%의 극빈층이 37%로 격감되는 효과를 달성했다(김덕훈, 2017). 2012년-2014년에 인도에서 시행된 실험에서도 절대빈곤 상태였던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배당 이후, 음식이나 교육, 의료 부분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여성과 어린이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산출했다(박은하, 2016).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세계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주빌리

정의는 그동안 소외되어 온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법률 및 제도를 구축하는 일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적 차원의 주빌리 정의 실천

개인적 차원에서 주빌리 정의는 공유경제를 비롯해서 나눔 공동체의 형성, 정의 실천과 관련된 역사적 고찰, 빈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재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미국의 흑인 사립대학인 모어하우스 칼리지(Morehouse College)의 졸업식 축사에서 부유한 사업가인 로버트 스미스(Robert F. Smith)는 4천만 불에 해당하는 모든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Maas, 2019). 이처럼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웃돕기 바자회를 통해서나 국내외의 구제 활동 단체에 기부를 함으로써 개인의 삶 속에서 주빌리 정의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생각과 느낌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작은 주빌리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다(이강천, 2017).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 토론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되, 지역 안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한 자원 및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실제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얻은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나눔 실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성서를 비롯한 다양한 기독교 전통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나눔 사례를 소개한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 및 종교개혁자들의 사회개혁 방안들을 고찰하면 인간이 자신의 소유욕을 극복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소유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암브로시우스의 『나뭇 이야기』나 루터의 『상업과 고리대금업』, 그리고 칼빈의 경제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삶 속에서 주빌리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지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김유준, 2019a; 2019b).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 등 과거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현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제학자 장하준은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아편전쟁을 비롯하여 불평등 조약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식민지를 점령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가난한 나라를 진심으로 도와주기는커녕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가난한 나라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나쁜 사마리아인”이라고 비판했다(Chang, 2014b, 44-50).

한편,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생충이나 도둑으로 매도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으로 하여금 빈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주며, 빈민구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Wren, 1977, 71-73), 사회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편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고하는 일이 요구된다.

IV. 주빌리 정의를 지향하는 주빌리 교육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빌리 교육은 크게 첫째, 인식적 차원에서 불의한 사회구조를 부양하기 위해 사회 일반에 퍼진 다양한 관념 및 가정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주빌리 정의의 실천을 위한 인식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둘째, 실천적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의미관점의 전환을 위한 주빌리 교육

성인교육자인 잭 매지로우(1990, 1-4)에 따르면, 성인 학습자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내면화한 의미관점과 의미체계 중 상당 부분은 외부에서 주입된 잘못된 신념들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학습자의 자율적 선

택과 발전을 방해하는 억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빌리 교육은 기독교교육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무분별하게 수용해온 기존의 의미관점을 주빌리 정의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재고하게 함으로써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위한 인식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기인한다.”는 사회적 통념은 빈곤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라든지(Hayek, 1988, 123), 자유의 우선성(Friedman & Friedman, 1990, 148), “황금 구속복”(Friedman, 2000, 102) 등은 그 반대 입장들과 비교,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다(Chang, 2014, 308-309; Stiglitz, 2002, 78-82;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2005). 즉,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학적 지식을 통해 성인 학습자들의 의미관점은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풍요 속에 절대 빈곤이 공존하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주빌리 교육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추적하고, 주빌리 정의의 성취를 방해해 온 다양한 인식적, 제도적 장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성인 학습자들의 순진한 의식을 일깨워 비판적 의식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Freire, 1970, 17). 가령,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상호주관적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미관점의 전환 과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현재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비전을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비전 가운데 조명해보고 그것들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함으로써(Groome, 1980, 207-223) 주빌리 정의의 실천을 위한 인식적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2. 사회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빌리 교육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성인교육은 공예배를 제외하면 주로 소그룹 중심의 성경공부나 일대일 제자양육에 집중되어 온 반면, 사회 속에서 거시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것은 일찍이 선교사들로부터 전수받은 '정교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빌리 교육은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참여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정의로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예컨대, 제도적 차원에서 현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식의 재분배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의 재분배가 되어야 할지 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독교교육의 현장은 사회를 위한 공적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주빌리 교육과정 및 교재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주빌리 정의의 실천을 위해서 신학적 논의들을 비롯하여 현대의 정의 담론 등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존 롤즈(2003, 45-52)는 출생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조건들을 배제한 원초적인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천부적 혜택에 있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제도가 정의롭다고 주장했으며, 아마르티아 센(2009, 7)은 이보다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불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 차원의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2008, 62-66). 또한, 스티글리츠(2016)는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짜인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빌리 교육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점에서 해방신학, 또는 우머니스트 신학, 민중신학 등의 상황신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신학에서 다루고자 했던 고통의 출처와 저항의 역사를 통해 주빌리 교육은 학습자들이 현재적 불의에 대해 어떻게 직면하고 저항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더 트루 코스트"와 같은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통해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속에서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으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학습자

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강윤주, 2017),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대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의 극심한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나(미국 알래스카 주의 사례), 통시적으로(홍콩의 사례) 실제 사례들을 조사함으로써 제도 변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결국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주빌리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정의 실천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주빌리 정의에 입각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주빌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흐름, 그로 인한 결과를 분석하는 일 등이 주빌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동국대의 김낙년(2016)은 소득세 자료 분석을 통한 사회양극화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현실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의 원인 및 악순환이 심화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독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빌리 교육은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경제체제를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식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주빌리 교육을 통한 토지 공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지닌 한계들을 보완하는 제3의 대안적 경제체제를 위한 가교(假橋)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상이한 관점을 좁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윤상, 2019; 이경숙, 1997; 조성찬, 2019).

궁극적으로, 주빌리 교육은 기독교교육의 성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단지 기능주의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마련 및 기금의 조성,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을 통한 공적 여론의 형성 등을 통해(Harris, 1999, 321-323) 주빌리 정의를 구현하도록 한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주빌리 정의를 위한 주빌리 교육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살펴보았다. 레위기에 규정된 희년법은 단지 성서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노예화된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사회변화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모티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사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실천에 한계가 많았던 만큼,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희년사상은 새롭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대적 맥락에서 희년의 실천은 크게 제도적 차원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것, 부채면제 운동,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유경제를 비롯해서 주빌리 정의 실천과 관련된 역사적 고찰, 빈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재고 등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처럼 주빌리 정의를 위한 주빌리 교육의 내용은 인식적 차원에서 그동안 성인 학습자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수용한 왜곡된 의미관점을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비전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인식의 변화를 토대로 학습자들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들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주빌리 정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미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대 사회 속에서 희년의 실천이 유토피아적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희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의 학습자들이 공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존재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택 (2008). 살롬을 위한 기독교교육: 니콜라스 윌터스토프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7, 193-218.
- 강용원 (2011). 세계화와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26, 21-55.
- 강윤주 (2017. 9. 4). 추미애, “슈퍼 지주 대상 보유세 검토해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041063468719> 2019. 09. 05. 인출.
- 김경열 (2016).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 성전과 기록한 백성**. 서울: 새물결플러스.
- 김균진 (1994). **역사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근주 (2019).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공의. 김근주 외. **희년**. 서울: 흥성사.
- 김낙년 (2016).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한국경제의 분석**, 22(3), 147-208.
- 김남예 (2019).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예수 따라 살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2, 161-194.
- 김덕훈 (2017. 7. 8).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기본 소득 실험. KBS 뉴스. <http://mn.kbs.co.kr/news/view.do?ncd=3512449> 2019. 02. 12. 인출.
- 김유준 (2019a). 초대 교부들의 희년사상. 김근주 외. **희년**. 서울: 흥성사.
- 김유준 (2019b). 종교개혁자들의 희년사상. 김근주 외. **희년**. 서울: 흥성사.
- 김윤상 (2019). 희년과 특권없는 세상. 김근주 외. **희년**. 서울: 흥성사.
- 김은주 (2016). ‘혐오’ 현상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48, 321-348.
- 김준우 (2011). 반다나 시바, 다양성과 지역성이 생산과 소비의 논리가 되면 생존이 가능하다. **기독교사상**, 633, 232-251.
- 김현숙 (2004).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대천덕 (2003). **토지와 경제정의**. 전강수, 홍종락 공역. 서울: 흥성사.
- 박미경 (2019). 기독교 경제 윤리에 기초한 한국 교회 목회자 사례비 운영의 제안: M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0, 261-303.
- 박은하 (2016. 7. 19).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의 시대.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191030461&code=115> 2019. 02. 12. 인출.
- 백은미 (2017). 기독교 교육과정예 내재한 여성혐오 분석과 대안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51, 41-73.
- 백은미 (2016). 고통의 종교적 의미 형성을 위한 전환학습. **신학사상**, 174, 261-3 01.
- 신현우 (2019). 신약성경에는 희년법이 없는가. 김근주 외. **희년**. 서울: 흥성사.
- 오인탁 (1989). 희년의 내용으로서의 교육민주화. **기독교사상**, 33(8), 31-42.
- 유은주 (2019). 세계화 시대의 희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탈인습적 기독교 인성교육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윤응진 (2015).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독교교육론**. 서울: 너의오월.

- 윤용진 (1995). 희년을 위한 교회교육. **기독교사상**, 39(1), 20-31.
- 이강천 (2017).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서울: 콤파출판사.
- 이경숙 (1997). “기쁨과 은총의 해”로서의 희년의 구약성서적 의의. **희년신학 연구**. 신학연구위원회 편.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이금만 (2012). 교회교육 진흥의 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29, 149-173.
- 이금만 (2007). 교회교육: 이론과 현장의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기독교교육논총**, 14, 87-121.
- 이윤석 (2011). 다문화 시대의 대학 선교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접근. **대학과 선교**, 20, 37-67.
- 이재욱 (2015. 8. 27). “7%만 갚으면 탕감” 빛 족쇄 끊는 ‘주빌리 은행’ 뒤흔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06317.html> 2018. 09. 23. 인출.
- 이종권 (2008).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 **동향과 전망**, 6, 173-203.
- 임경석 (2011). 글로벌 기본소득. **시대와 철학**, 22(4), 255-283.
- 임희숙 (2010). 먹거리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23, 273 -296.
- 장성길 (2019). 구약성경에 나타난 희년법. **희년**. 김근주 외. 서울: 흥성사.
- 장운재 (2016). 경제양극화 극복을 위한 화해의 선교-교회의 공식문서에 나타난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1, 73-106.
- 장운재 (2008). 모든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 **대학과 선교**, 14, 160-179.
- 장종철 (1991). 희년을 맞기 위한 평화 통일 교육의 모색. **세계의 신학**, 12, 7-20.
- 전강수 (2010). **부동산 투기의 종말**. 서울: 시대의 창.
- 정중호 (2015). 희년 공동체와 한국 - 노비해방, 채무면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1(1), 93-120.
- 조성찬 (2019). 희년으로 본 북한 상생발전 모델. 김근주 외. **희년**. 서울: 흥성사.
- 최영실 (1997). 이미 예수에 의해 실현된 희년. **희년신학연구**. 신학연구위원회 편.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최은택 (201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독교적 청소년 정의교육. **기독교교육정보**, 57, 257-293.
- 한국기독교총회교육원 편 (2015). **13개의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 교재1**. 서울: 만우와 장공.
- 한국기독교총회교육원 편 (2016). **13개의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 교재2**. 서울: 만우와 장공.
- 한국기독교총회교육원 편 (2017). **13개의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 교재3**. 서울: 만우와 장공.
- 황예랑 (2008. 11. 2). 불사 패밀리어! 몰라 강력한 재분배정책.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9547.html#csidxf9cfd553001089980cfecdd97ca4ead 2017. 07. 18. 인출.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의 역사.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history/> 2019. 04. 19. 인출.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main.jsp> 2020. 05. 15. 인출.
- 희년은행. <https://jubileetogether.tistory.com/> 2019. 06. 07. 인출.
- 희년함께. <http://landliberty.org/> 2019. 06. 07. 인출.
- Bellinger, W. H. (2016). **레위기 민수기**. 김진선 역. 서울: 성서유니온. (원저 2001 출판)
- Bright, J. (1967). *The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London: S.C.M.
- Brueggemann, W. (2002). *The land: Places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2nd ed.).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2002.
- Chang, H. J. (2014a).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김희정 역. 서울: 부키. (원저 2014 출판)
- Chang, H. J. (2014b).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순희 역. 서울: 부키. (원저 2008 출판)
- Coleman, J. A. (1989). The two pedagogies: Discipleship and citizenship. In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Boys, Mary C., ed. New York: Pilgrim.
- De Vaux, R. (1983). **구약성서의 생활 풍속**. 이양구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원저 1958-1960 출판)
- De Vaux, R. (1961).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J. McHugh, Trans.). New York: McGraw-Hill. (Original work published 1958-1960)
- Eisner, E. (1994). *The educational imagination* (3rd ed.).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 Flinders, D. J., N. Noddings, & S. J. Thornton (1986). The null curriculum. *Curriculum Inquiry*, 16(1), 33-42.
-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London: Penguin.
- Friedman, M. & Rose, F. (1990). *Free to choose*. New York: Harcourt.
- Friedman, T. L. (2000).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Rev. e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Groome, T. H. (1980).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 Habel, N. C. (1995). *The land is mine*.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 Harris, M. (2015). **주빌리를 선포하라: 21세기를 위한 영성**. 김은주 역. 서

- 울: CLC. (원저 1996 출판)
- Harris, M. (1999). Proclaiming jubilee justice. *The Way*, 39(4), 315-324.
- Harris, M. (1996). *Proclaim jubilee*.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 Hartley, J. E. (2006). **레위기**.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원저 1992 출판)
- Hartley, J. E. (1992). *Leviticus*. Dallas, TX: Word Books.
- Hayek, F. A. (1988). *The fatal conceit*. London: Routledge.
- Howton, E. (2018. 10. 17). Nearly half the world lives on less than \$5.50 a day. *The World Bank*. Retried May 22, 2020, from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8/10/17/nearly-half-the-world-lives-on-less-than-550-a-day>.
-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2005).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이주명 역. 서울: 필맥. (원저 2002 출판)
- Kim, H. S. (2015). Seeking critical hope in a global age: Religious education in a global perspective. *Religious Education*, 110/3, 311-328.
- Kim, U. Y. (2011). Leviticus 25:1-24.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65(4), 396-398.
- Larson, A. (2019, April 22). Academia,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debt: Forming a genuine collaboration. *Common Dreams*. Retrieved May 10, 2019, from <https://publicseminar.org/2019/04/academia-grassroots-organizations-and-debt/>
- Maas, J. (2019, May 20). Austinite Robert F. Smith pledges to pay 2019 Morehouse graduates' student loan debt. *KUT*. Retrieved May 22, 2019, from <https://www.kut.org/post/austinite-robert-f-smith-pledges-pay-2019-morehouse-graduates-student-loan-debt>.
- Mezirow, J. (1990). *Fostering critical reflection in adulthoo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lgrom, J. (2010). *Leviticus 23-2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yers, B. L. (2017). *Engaging globalization: The poor, christian mission, and our hyperconnected worl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North, R. (1954). *Sociology of the biblical jubilee*.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 Parijs, P. & Vanderbourght, Y.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 A. S. (2004). *From hurt to healing: A theology of the wounded*. Nashville, TN: Abingdon.
- Rawls, J. (2003). **정의론**. 황경식 역. 서울: 이학사. (원저 1999 출판)

- Ringe, S. H. (1985). *Jesus, liberation, and the biblical jubilee*. Philadelphia, PA: Fortress, 1985.
- Sen, A. (2009). *The idea of justic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 A. (2008).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원용찬 역. 서울: 갈라파고스. (원저 1999 출판)
- Stiglitz, J. E. (2016). *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 New York: W. W. Norton.
- Stiglitz, J. E. (2013).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이순희 역. 파주: 열린책들. (원저 2012 출판)
- Stiglitz, J. E.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W. W. Norton.
- Tidball, D. (2016). **레위기 강해: 거룩한 삶을 위해 해방된 백성**. 안종희 역. 서울: IVP. (원저 2005 출판)
- Wenham, G. J. (1979).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MI: Eerdmans.
- Wren, B. A. (1977). *Education for justice*. Maryknoll, NY: Orbis.
- Wuthnow, R. (2002). Beyond quiet influence: Possibilities for the protestant mainline. In *The quiet hand of God: Faith-based activism and the public role of mainline protestantism*. Evans, J. H. & Wuthnow, R., ed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The Contents of Jubilee Education for Jubilee Justice

Eunju Yoo

Lecturer, Yonsei University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the economic crisis and poverty that are deepening due to the recent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biblical Jubilee in order to seek how "Jubilee justice" can be realized in the modern context.

The Law of Jubilee consists of four contents: the liberation of slaves, debt remission, land return and fallow. Ultimately it aims to prevent human slavery and preserve equality. Nevertheless, the thought of Jubilee has been distorted theologically and situationally, and as a result, it has been overlooked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and there is a limit in Christian practice for social justice.

The thought of Jubilee, however, can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of modern society such as the issue of the privatization of Christianity or the deepening of polarization caus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practice of social justice.

In other words, the thought of Jubilee can act as a biblical initiative in reforming wrong laws and establishing institutions for the poor on the institutional level; on the personal level, it can be a great motive in terms of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the practice of the sharing economy.

Jubilee education, which aims for Jubilee justice, helps to break the misconceptions and change the existing meaning perspectives on the basis of various interdisciplinary knowledge and supports social behavior for transforming social structure through activation of public opinion and fund raising at the practical level.

Therefore, the learners of Christian education can play a public role in transforming the unjust society.

〈 **Keywords** 〉

Jubilee, Jubilee justice, Jubilee education, Public concept of land, Rent, Poverty, Transformation of meaning perspective

- 투고접수일 : 2020년 05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6월 25일